

#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(인도한국센터)

2026년 제 108회

## 준비물

- 수험표, 규정 신분증(여권 혹은 AADHAR card)

## 시험 응시 관련

- 신분증의 사본 또는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,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수험표에 사진이 없거나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,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수험표 상의 성명과 신분증 상의 성명이 완전히 다른 경우,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시험당일 시험장에는 응시자와 시험관계자 외에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
-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완료시간 전까지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, 이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
- 응시자는 지정된 시험장/시험실/좌석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지정되지 않은 시험장/시험실/좌석에서 응시할 경우, 성적이 무효 처리됩니다.

### <입실 및 퇴실시간(현지시간 기준)>

| 구분       | 교시  | 영역       | 인도, 푸네 -인도한국센터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시험 시간<br>(분)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입실 완료<br>시간    | 시작           | 종료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TOPIK I  | 1교시 | 듣기<br>읽기 | <b>09:10</b>   | <b>09:40</b> | <b>11:20</b> | 100          |
| TOPIK II | 1교시 | 듣기<br>쓰기 | <b>12:20</b>   | <b>12:50</b> | <b>14:40</b> | 110          |
|          | 2교시 | 읽기       | <b>15:00</b>   | <b>15:10</b> | <b>16:20</b> | 70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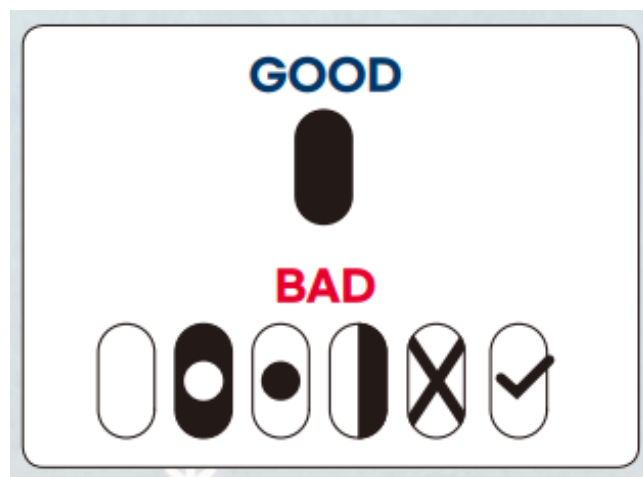
- 응시자는 문제지의 유형(홀수·짝수)과 답안지에 마킹한 문제지 유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 (이상이 있을 시 반드시 감독관에게 알립니다.)
- 시험 도중에는 퇴실할 수 없으나, 질병이나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조용히 퇴실할 수 있습니다. 중도 퇴실한 때에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, 시험이 끝날 때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

기해야 합니다.(중도 퇴실 시,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.)

- 시험 도중에 질병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등으로 퇴실 및 재입실할 때는 복도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중도퇴실자,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.
- TOPIK II의 경우, 1교시 결시자는 2교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환불도 받을 수 없습니다.
- TOPIK II 시험은 시험 중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. 단 휴식 시간에도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, 시험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답안지 작성 관련

- 답안지 작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(특히, 불완전한 마킹, 올바르지 않은 답안지작성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)
- 시험 시간 관리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  - 듣기 중에는 듣기 답안만, 읽기/쓰기 중에는 읽기/쓰기 답안만 작성, 듣기 평가의 경우 별도 마킹 시간 없음
-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낙서를 하거나 불필요한 표기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답안지 위·아래의 타이밍 마크(■■■■)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
- 문제지에만 답을 쓰고 답안지에 옮기지 않으면 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답안지 작성은 감독관이 배부한 양면 사인펜만 사용 가능합니다.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,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채점결과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- 듣기/읽기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굵은 펜을 사용하고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"●"로 표기하여야 합니다. (불완전한 마킹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)



- 쓰기 답안은 양면 사인펜의 얇은 부분을 사용하여 반드시 정해진 답란 안에 작성해야 하며, 정해진 답란을 벗어나거나 답란을 바꿔서 쓰면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답안을 수정할 때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수정테이프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조용히 손을 들거나, 응시자가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면 됩니다.
- 답안지는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답안지는 제출해야 합니다.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,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등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 처리됩니다.
- 시험이 끝나도 시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사용한 문제지와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문제지나 답안지를 가지고 시험실 밖으로 나가면 부정행위 처리됩니다.

###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문제 무단 배포 금지

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문제는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유출, 복제, 배포할 수 없으며, 이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.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 유출, 배포한 경우에는 민·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 <고등교육법 시행령> 및 <한국어능력시험(TOPIK) 기본운영규정>에 따라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.

### 반입 금지 물품

- 전자·통신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응시자는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-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(소지 불허 물품)의 제출 및 보관 과정에서 물품 파손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.
- 시험 중 반입 금지 물품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응시자 소지 중 적발된 경우에는 <고등교육법 시행령> 및 <한국어능력시험(TOPIK) 기본운영규정>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## 소지 불허 물품

- 응시자는 시험 중 전자·통신기기·손목시계 등의 개인물품을 소지하거나 다른 장소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.
- 모든 전자·통신기기·손목시계 등은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전원을 끈 뒤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 |  |  |  |  |
| Cell phon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E-Dictionar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E-book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Voice Record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Bluetooth Earphon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Electronic Cigarett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|  |  |  |  |
| Smart Watc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Smart glass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Pen Dictionary / Scann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Lapto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Tablet P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Digital/Analog watc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▶ 위 그림에 나열되지 않았더라도, 시험실 감독관이 휴대전화, 스마트기기(스마트워치, 스마트안경 등), 디지털 카메라, 전자사전, MP3 플레이어, 태블릿PC, 카메라펜, 전자계산기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, 디지털/아날로그 손목시계, 기타 충전식 물품(전자담배, 보조배터리 등), 통신(블루투스 등) 기능이 있는 이어폰(한국어능력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지침,에 따라 승인받은 보청기는 제외)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모두 제출할 것을 고지한 이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험 시간, 쉬는 시간을 불문하고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및 「한국어능력시험 기본 운영 규정」에 따라 **부정행위자로 조치되며, 1교시 시험 전 감독관에게 소지 불허 물품을 제출하지 않은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**

## 기타 유의사항

-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이며,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증명서는 출력할 수 없습니다.
- 성적증명서의 개인정보(영문성명 등)는 응시원서(또는 수험표)에 기재한 정보가 그대로 반영됩니다. 성적증명서의 불완전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- 응시자는 시험 당일까지 영문명·사진 등 접수 정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,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관리본부에 응시자 정보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응시자는 성적 발표 후 성적증명서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, 시험일 이후에는 시행기관의 귀책 사유 외에 정보 정정은 불가합니다. (단, 시행기관의 귀책 사유에 의한 정보 정정도 성적발표일 이후 4주까지만 가능)
- 부정행위자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시험 관계자가 응시자 사진, 신분증 등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.

## 부정행위 처분 안내

- 부정행위 처분 통지(사전통지 포함)는 적발된 응시자의 전자우편주소(이메일)로 송달됩니다.
-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 처분 사전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이메일(topik@korea.kr)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◦ 부정행위 처분은 전자문서로 진행되며, 적발된 자의 전자우편주소(이메일)로 송달됩니다.

## 부정행위자 처리 안내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정행위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행령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녹음, 촬영 등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본운영규정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시험 종료 후 제공된 메모지(말하기 평가만 해당)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제출한 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<br>(단, 시험실 외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보관·관리 중인 경우 제외)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필기구, 수정테이프 등 일체의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그 밖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| ▶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행령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본운영규정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로 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문제지, 답안지 및 제공된 메모지(말하기 평가만 해당)가 아닌 곳에 문제나 답안 등을 적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시험종료 후 문제지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시험문제, 답안 및 제공된 메모지(말하기 평가만 해당) 촬영 및 음원 녹음하거나, 기타 방법으로 기록·저장하는 행위 또는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·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성적증명서를 위·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그 밖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</li> </ul> |     |
|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</li> </ul>       | 시행령 |

※ 자세한 내용은 TOPIK 홈페이지([www.topik.go.kr](http://www.topik.go.kr)) 참고